

2022. 3. 1.

3. 격리 생활 및 지원에 대해 궁금합니다.

1

격리 관련

Q1.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 하나요?

- 아닙니다. 2022.3.1.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. 단, 다음 권고 사항을 확진환자 검사일(검체채취일)로부터 10일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- 동거인은 확진환자 검사일(검체채취일)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, 6~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를 권고드립니다.
- * 신속항원검사: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(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, 선별진료소 방문)
- *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를 권고

!권고 수칙! :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,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,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(방문) 및 사적 모임을 제한

-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은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,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
- *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
- ※ 동거인이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 구성원인 경우, 등교(등원)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

Q2. 모든 가족이 확진되어 격리되면, 생필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?

- 재택치료자는 본인의 진료 외 외출이 제한됩니다. 모든 가족이 확진되어 격리되는 경우 생필품 등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시도록 권고되며,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Q3. 확진자 외 다른 가족이 있는데 화장실은 하나인 경우 재택치료 예외가 인정 되나요?

○ 재택치료는 동거인과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.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.

※ (생활수칙 주요내용) 생활공간 분리,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,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,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

- 다만,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경우 접촉을 피할 수 없어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, “사용시 마다 소독”이 필요합니다.

※ (화장실 사용 관련) 변기 사용 시에는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린 후 매 사용시 마다 소독

Q4. 공동격리자가 꼭 필요한 외출을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나요?

○ 동거인은 10일간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,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하는 경우 옷을 갈아입고, 손소독을 한 후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를 상시 착용,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*개인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전·후로 반드시 손소독을 해야 합니다.

-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, 엘리베이터 탑승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

Q5. 청소년 등의 동거인이 학교에 가지 못 할 경우 출석 인정이 되나요?

- 소아청소년이 동거인인 경우 기관별(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) 지침에 따라 강화된 기준으로 동거인 등교·등원(출근)을 제한하는 경우 출석이 인정되도록하고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, 교육 동영상 또는 온라인 과제물 제공 등 대체 학습도 제공되고 있습니다.

Q6. 재택치료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- 재택치료 대상자는 대상별로 허용된 범위¹⁾ 이외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. 확진자에 대해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(자가격리자 앱 미사용),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.

¹⁾(재택치료자): 대면진료

(기타) 재난, 응급의료,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, 치매, 착오 등 고의성 없음 등

** 1년 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벌금(감염병예방법) + 형사고발,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

Q1. 재택치료자, 공동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?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원·격리 통지서를 받은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는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-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일 지원액에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.

생활지원비 지원기준('22.2.14. 이후 입원·격리통지자부터 적용)

(단위 : 원)

가구내 격리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생활지원금 (14일분, 월 상한액)	488,800	826,000	1,066,000	1,304,900	1,541,600	1,773,700
(日 지원 환산액)	34,910	59,000	76,140	93,200	110,110	126,690

- 1)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,000원씩 추가 지급
- 2)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

Q2.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나요?

○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병·의원 방문, 코로나19 예방접종, 의약품 구매·수령, 식료품 구매,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 외출이 허용됩니다. 단, 가능한 한 외출을 최소화하고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2022.3.1.일부터 격리가 면제되어 외출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생필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. 단, 동거인에 대해 PCR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 대기를 권고하며, 그 이후 기간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도록 합니다.

※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,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,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(방문) 및 사적 모임을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.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.

- 재택치료자가 1인가구일 경우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노령층 등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, 다른 거주지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온라인 구매 도움을 받거나,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생필품 지원(대리 구매 요청 포함)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지자체 또는 보건소 상황에 따라 생필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Q3.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재택치료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나요?

- 현재,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.

Q4. 12세미만의 소아가 확진되었습니다. 엄마는 접종완료자인데 보호자로서 공동격리가 가능한가요? 이때, 격리통지서 및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?

- 그렇습니다. 재택치료 대상인 소아 등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, 접종완료자인 경우도 보호자로서 공동격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때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단,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공동격리중이므로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, 병·의원 방문, 의약품 구매·수령, 식료품 구매,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.

Q1. 변경된 동거인에 대한 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?

- 2022.2.9.부터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 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이며, 2022.3.1.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재택치료자의 검사일(검체채취일)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따르셔야 합니다.

◆ 재택치료자/동거인 관리기준

구분	관리방식 및 기간	해제 전검사(PCR)	격리 및 감시 해제 시점
재택치료자 (확진자)	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▶	없음	7일차 24:00 (= 8일차 00:00)
동거인	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▶▶ 확진환자 검사일(검체채취일)부터 10일	확진환자 검사일 기준 6~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	10일차 24:00 (=11일차 00:00)

▶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: 출근·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,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

▶▶ 권고 수칙 : PCR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, 출근 및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착용, 대면접촉 최소화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, 권고준수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, 증상 호전시까지 자택 대기

*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철저히,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

·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

※ 동거인이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 구성원인 경우, 등교(등원)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

Q2.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은 언제인가요? 몇 시 해제인가요?

- 재택치료자(환자)의 격리기간은 검사일(검체채취일)로부터 7일이며, 7일차 밤 자정(24:00)에 자동 해제됩니다.

▶ (예시) 진단 시 무증상자

11.1.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.7. 24:00 격리해제 가능

▶ (예시) 진단 시 유증상자

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: 11.1. 12시 증상 발생 → 11.2. 검체채취 → 11.4.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→ 11.8. 24:00 격리해제 가능

Q3. 유증상 확진환자의 경우, 증상발생일에 따라 격리해제일이 달라지나요?

- 2022.2.9.일부터 재택치료자는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사일(검체채취일)로부터 7일까지 격리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Q4. 동거인의 수동감시 해제일은 언제인가요?

-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대상이며, 권고 준수 기간은 확진환자 검사일(검체채취일)부터 10일입니다. 즉, 2월 1일 재택치료환자가 검체채취를 하였다면 2월 10일 밤 자정(24:00=11일 0시)에 감시기간이 종료됩니다.

Q5. 공동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언제인가요?

- 돌봄이 필요한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이 공동격리가 된 경우 공동격리자의 격리 해제일은 재택치료 환자의 검사일(검체채취일)로부터 7일까지입니다. 즉, 2월 1일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(검체채취일)이라면 환자와 동일한 2월 7일 밤 자정(24:00=8일 0시)에 격리 해제됩니다.

Q6. 재택치료자는 격리해제를 위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?

- 확진자의 격리해제는 임상경과기반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2.9일 이후 격리기간은 검사일(검체채취일)로부터 7일째 자정(24:00)에 해제되며, 별도의 검사나 통보 없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. 이는 국내외 연구결과를 통하여 7일 이후에는 전파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.
 - 코로나19 초기에는 PCR 검사기반으로 격리해제를 하였으며, 최근까지도 검사기반 격리해제를 준용하기도 하였으나, 2.9일 이후에는 거의 모든 환자는 임상경과기반의 격리해제를 통해 해제되고 있습니다.
 - 이는, PCR 검사 방법은 매우 민감도가 높아 바이러스의 사멸 이후에도 양성 결과를 보일 수 있고, 세포 내에 남아있는 소수의 죽은 바이러스 조각만으로도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Q7. 가족 중 한명이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양성이 확인된 후 당일 생활치료센터(또는 병원)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. 환자와 같은 집에 있지 않아도 동거인은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하나요?

- 그렇습니다. 환자의 격리 및 치료장소(재택,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)에 상관없이 검사일(검체채취일) 당시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이라면 검사일(검체채취일)을 기준으로 접촉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며, 방역당국이 권고하는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 - 이는 환자와 접촉 후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경우, 잠복기는 1~14일 (평균 5~7일)이며, 증상 발생 1~3일 전부터 호흡기로부터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격리하며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하기 위함입니다.

Q8.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,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. 이 경우 집으로 돌아가 7일간의 격리를 유지해야 하나요?

- 그렇습니다. 확진자는 검사일(검체채취일)로부터 7일간의 격리기간을 유지해야 하며, 병원 입원 중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더라도 남은 기간은 재택치료기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- 이는 환자와 접촉 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경우, 평균 잠복기는 2~4일이며, 감염력은 증상발현 1주일 이내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남은 기간 재택격리(치료)를 하며 추가적인 증상발생여부 관찰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

Q1. 재택치료자 및 접종미완료자인 동거인의 진료를 위한 외출이 가능한가요? 이 때 재택치료자가 직접 운전해서 외출할 수 있나요?

- 우선, 재택치료자가 본인의 진료를 위해서 **외래진료센터**를 이용하는 경우 직접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- 외래진료센터 방문시 1) 방문하고자 하는 **외래진료센터에 사전 예약 및 통보**, 2) 확진자 아닌 사람은 **동승 금지**(소아 등 불가피한 경우 가능), 3) **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** 및 운전자 **장갑 착용**, 하차 후 차내·외 **표면소독**, 4) **동선을 최소화**하여 외래진료센터(주차장 포함) 외 **다른 장소 경유 또는 하차 금지** 등 유의사항을 지키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, 자녀의 진료, PCR 검사 등에 한하여 본인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으러 가실 수 있으나, 마스크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, 상시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귀가하시기 바랍니다.
- 2022.3.1.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(검사일(검체채취일))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어 외출은 가능하지만,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PCR 검사후 음성으로 확인될때까지 자택 대기 를 하여 주시고,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 - * 10일동안의 권고사항 준수기간에는 보건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지 않으며, 본인이 스스로 증상을 모니터링 중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.

Q2. 재택치료 대상인 환자가 혼자 사는 경우 생필품 등 구입을 위해 외출이 가능한가요?

-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2022.3.1.일부터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외출이 가능합니다.
- 재택치료자가 1인가구일 경우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노령층 등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, 다른 거주지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온라인 구매 도움을 받거나, 행정안내센터*에 연락하여 생필품 지원(대리 구매 요청 포함)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지자체 또는 보건소 상황에 따라 생필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

* 보건소에서 문자로 통보, 또는 지자체별 게시판에 홍보

Q3.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활동에 제약이 없는건가요?

- 2022.3.1.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(검사일(검체채취일))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며 다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10일 동안의 권고 및 준수사항]

-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, 음성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합니다.
- 이후에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,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①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착용, ②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, ③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.
- 6~7일차에,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(자기검사 또는 의료기관·선별진료소 방문)
-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, 평소 이용하시는 병·의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.
* 진료 및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
-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,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합니다. 첫 재택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하지 않습니다.

Q4. 재택치료자의 부모님 임종 상황입니다. 외출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?

-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의 외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.